

무자격 체류자 외국인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향후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.



안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(외국인대상)



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

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
- ② 해외 방문력 있고,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-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

안내 말씀

-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,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.

- ② 체류 자격이 없는(불법체류)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.



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

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1339콜센터로 문의 후, 필요시 다음과 같이 3자통역이 가능합니다.

◎ 1339(1345 또는 1330 연계) 외국어 안내 시간 및 종류

전화번호	이용시간	언어
☎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
	09:00~18:00	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방글라데시어, 파키스탄어, 네팔어, 캄보디아어, 미얀마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필리핀어, 아랍어, 스리랑카어
☎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, 일본어
	08:00~19:00	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

※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- 공지사항 - 14개국어 번역본 참조

